

Korean Tax Update

May 2018, Issue 47

[조세뉴스]

기획재정부,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개정 [보도자료]

2018년 조세조약에 따른 정기 금융정보 교환에 따라 과세관청은 9월 말까지 60개 관할권에 해당 관할권 거주자의 국내금융정보를 제공하고, 78개 관할권으로부터 해당 관할권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국내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취할 예정임. 이를 위해 6월 말까지 금융기관이 과세관청에 금융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관할권의 범위를 조정하고, 보고금융계좌 확인절차 등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개정함.

국세청,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재산 은닉 행위에 엄정 대처 [보도자료]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지난해에는 해외 재산 은닉·도피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233명을 조사하고 1조 3,192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이 중 1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6명을 고발 조치하였음.

국세청,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대재산가 5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보도자료]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이번 조사대상자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하여 '핀셋' 선정하였음.

국세청,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전면 개정(안) 행정예고 [전문보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현장확인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는 등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을 전면 개정함. 총 37개조를 축소하여 현행 조문 132개를 95개로 간소화하는 한편, 현장확인 기간(5근무일 이내)과 출장횟수(3회 이내)를 명시하는 등 통일된 운영기준과 결과조치 방안을 마련함. 그 외 국세기본법 상 부분조사 사유와 세무조사사전통지 기한 확대를 반영하고 신고서 처리절차 등 사무분장 개정을 반영함.

기획재정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함.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연령상한을 29 세에서 34 세로, 일몰 기한은 2018년에서 2021년으로 확대함.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의 경우,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인상하고 감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통신판매업 등 3개 업종을 대상업종에 추가하고 수도권과 밀역제권역 내 지역은 5년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외 지역은 5년 100%로 확대함(현행 3년 75%, 2년 50%)

[예규·판례]

[판례 1] 구 법인세법 상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상 가치 평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 두 41463 판결

- 구 법인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3 호 및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 24 조 제 4 항에 따르면,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없음.
- 원고가 흡수합병 후 회계장부에 영업권을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은 관련 기업 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이처럼 법인 합병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영업권에 관한 회계상의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판례 2]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 두 58765 판결

- 이 사건 각 지점에 있는 아울렛, 백화점, 마트 또는 시네마는 모두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장소적 인접성이 인정되고, 각 사업장의 고객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의 고

객과 종업원이 이용하는 화장실 등 공공편익시설, 직원 휴게실, 직원 식당, 주차장 등 공용 장소와 설비의 이용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법인은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음. 또한, 대외적으로도 안전·청소 등 용역계약, 전기·수도요금 등을 마트 사업장 또는 원고 법인 명의로 일괄 계약 및 납부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지점 건물을 이용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요건인 종업원수 50 인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판례 3]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 두 32385 판결

- 원고의 중추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룹의 회장, 부회장, 기획조정실장의 집무실이 이 사건 건물에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기획조정실에 파견된 원고의 직원 3 명이 수행하는 업무는 원고의 경영 점검 등의 감사업무, 신규사업개발을 위한 재무현황 파악 보고, M&A 업무 지원, 경영실적 집계 및 계열사 간 업무 조정, 원고의 신입사원 공채 및 교육 등 원고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필수적인 기획 · 조정 · 총괄 · 재무 · 인사 · 감사 등으로서 본점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이 사건 건물에서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계열사와는 분리된 그룹이라는 법적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업무 중 적어도 원고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본점 업무에 해당함.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타당함.

[판례 4]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 인가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 두 30471 판결

- 회생절차가 개시된 원고가 그 임원 등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그에 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후 위 급여와 퇴직금 채권을 면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 인가로 위 급여와 퇴직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로써 원고의 위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도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 2783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 조의 2 제 2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 4 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 5]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 매매용부동산을 물적분할을 통해 양도 시,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기간 산정 방법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 두 44342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 본문은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제외하고 있는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6 조 제 9 항 제 1 호 단서에서 말하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그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부가 아니라,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양도를 통하여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만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함.

[심판례 1] 매출액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청구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 서 4158, 2018. 4. 24.

- 조특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 단서 및 제 2 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단서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할 경우 그 때부터 그 유예기간이 바로 실효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조특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실효되었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례 2] 다기관 제품설명회 개최시 발생한 쟁점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조심 2016 서 2538, 2018. 5. 15.

- 단일기관 제품설명회와 달리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해당 지역의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를 기획하여 각 병원의 의료진에게 사전 공지하고, 공지를 받은 의료진 중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협회에 사전 신고하는 등 다기관 제품설명회 개최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한 점, 쟁점비용을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제 25 조의 접대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례 3] 경정청구일 현재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가 아닌 '일반적인 국세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 부 0555, 2018. 4. 26.

- 2016.12.20. 개정된 「법인세법」 제 58 조의 3에서 '분식회계' 및 '내국법인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충족하는 분식회계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 과다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2017.1.1. 이후 경정청구'가 아닌 '2017.1.1.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개정취지는 분식회계에 따른 환급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안 발의서 등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 점, 경정청구의 효력은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과 같이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이 2017.1.1.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정청구 시점에 '경고. 주의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정 시점에 분식회계로 인한 '경고. 주의 등의 조치'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분식회계로 인한 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 4]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 중 주거용지 및 기반시설(무상양여)로 사용될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사업에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 지 1180, 2018. 4. 23.

- 구「지방세법 시행령」제 102 조 제 5 항 제 24 호 가목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 51 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를 도시개발사업 토지 해당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종전과 동일하게 쟁점토지를 전, 답, 임야, 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위 법문의 규정과 달리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전과 같은 용도인 농지 등으로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의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배제하지 아니한 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 있을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 119 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제 102 조 제 5 항 제 24 호는 과세대상 물건의 현황과 무관하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에서 주거용지로 사용될 토지와 무상으로 양여하여 기반시설용지로 사용될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 5] 청구법인의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17 서 4910, 2018. 4. 10.

- 청구법인이 제휴사로부터 마일리지 상당의 금전을 정산·지급받음으로써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차 거래에서 사용된 제휴 마일리지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제휴사가 적립해 준 것이라면 청구법인은 그 마일리지 상당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결국 통상의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예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마일리지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쪽은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제휴사(1 차 거래)인데 정작 매출세액 줄어드는 쪽은 마일리지의 사용을 받아준 청구법인(2 차 거래)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제휴 마일리지 상당 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례 6]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에서 국외 파생상품 양도차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 광 5135, 2018. 5. 03.

- 청구인은 국외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가상의 수익일 뿐 실제 수익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만약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대로 국외시장(연계시장)의 파생상품 취득가액과 그 직전 국내시장(정규시장) 종가와의 차액이 국외파생상품 거래 계좌에서 정산된다면, 결국 국외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은 그 국외거래분 계좌에서 발생하는 결제차액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2018.2.1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9 조의 2 및 제 178 조의 2 규정은 2017년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2016년 귀속분인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례 7]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조정지, 퍼팅연습장 토지 및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

조심 2018 지 0218, 2018. 4. 16.

-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훌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홀과 홀 사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임야 상태의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 타당함. 또한 회원제 골프장 내에 소재한 오수처리시설, 퍼팅연습장, 퇴비장 및 소각장과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직원식당과 휴게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한 중과세대상인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

[예규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8-부가-1084, 2018. 4. 27.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예규 2]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신탁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

서울세제-5858, 2018. 5. 3.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모은 자금 등으로 단순히 집합투자기구 신탁재산의 투자·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탁자에게 지시하는 권한만 가질 뿐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제 3자를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신탁재산에 대한 모든 손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청구권 등 신탁재산의 처분과 손익에 관하여 권리가 가지지 않을 경우, 다른 부동산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위탁자 지위 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

[예규 3] 매립·간척 등을 통해 조성중인 토지에 대해 분양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부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운영과-1062, 2018. 5. 8.

-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 원시취득이 성립하기 전에는 그 대금 지급의 대상은 토지가 아닌 분양권에 해당하는데,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취득세는 거래 단계별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시행자의 원시취득이 도래한 이후라야 수분양자의 승계취득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원시취득이 있기 전에는 승계취득의 일종인 연부취득이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취득세 과세대상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분양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예규 4]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서 해외채권을 매수·매도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2, 2018. 4. 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의 거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래대상 채권의 매도자 및

매수자(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 매도 · 매수 시기, 매도 · 매수 가격 등 거래 전반을 설계, 확정 짓는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해외채권시장에서 해외채권을 매수하여 매도하는 거래를 하고 그 매매차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52 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예규 5]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면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 2018. 4. 19.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신청법인이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재고자산을 다른 사업자(이하 "양수자")에 이전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법인이 양수자의 재고자산에 대한 판매가격 및 판매방법을 결정하여 수탁 판매하고 그 수탁판매대금이 양수자에게 보장한 약정판매대금에 미달시 재고자산을 재매입하며 신청법인의 귀책사유 불문하고 재고자산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무를 지는 등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보상과 위험을 계속적으로 부담하여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4 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예규 6] 사모단독자사주펀드 계약기간 만료로 수익증권 환매시 투자자에게 자사주를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21, 2018. 4. 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상장법인인 을법인 1 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한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을법인이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펀드 해지시 같은 법 제 235 조제 5 항에 따라 신탁재산인 을법인의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을 통해 을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 2 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삼정 KPMG 조세본부 소식]

[재조사]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 중 순손익가치 평가시 1 주당 추정이익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일시우발적 손익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유사 사례의 대법원 판례 검토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 개정취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약 12 억원 환급을 성공적으로 완료

- GT 본부 김동훈 상무(02-2112-0938), 박상훈 이사(02-2112-6672)

[불복] 선 배당금 수령 후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 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심판청구

해외자회사가 과세이연제도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 소재 모회사가 그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였고, 그 이후에 해외자회사가 소재지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상황으로, 이와 같이 배당금 익금산입 이후에 외국자회사의 법인세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 57 조 제 4 항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거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수행하여 법인세 43 억원 환급을 성공적으로 완료

- DT & FS Tax 본부 이성태 전무(02-2112-0950), 최세훈 S.Manager(02-2112-6728)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 2018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